

# 제7강 과세가격의 결정(1)

강 의 : 관세청 정재완 박사

Welcome to  
Korea Customs service



## <주요 강의내용>

1. 관세의 과세방법
2. 가격신고제도
3. 관세평가 방법과 원칙
4. 제1방법에 의한 관세평가
5. 제1방법 적용의 요건(1)
6. 제1방법 적용의 요건(2)
7.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8. 가산할 금액
9. 공제할 금액

국세공무원교육원

## 1. 관세의 과세방법

- **종가세** : 과세가격 \* 과세환율 = 관세액
  - 대부분의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는 종가세 방법에 의함
  
- **종량세** : 수입수량 \* 단위당 관세액 = 관세액
  - 영화용 필름, 일부 농산물등의 과세에서 적용
  
- **종가세제에서 과세가격 결정방법(평가방법)은 WTO 평가협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
  - WTO회원국들 모두가 동일한 방법 적용

## 2. 가격신고제도

- 수입자는 통관시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외에 과세가격결정과 관련된 가격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다만, 과세가격 결정에 어려움이 없다고 보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다음의 경우는 가격신고를 생략
  - 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수입하거나 정부가 조달하는 물품
  - ②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
  - ③ 방위산업용기계와 동 부분품 및 원재료로 수입하는 물품
  - ④ 수출용원재료
  - ⑤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거하여 특정한 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 3. 관세평가 방법과 원칙

- WTO평가협정 및 관세법에서 정한 관세평가 방법은 다음 6가지
  - 1.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에 의한 평가(제1방법)
  - 2.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에 의한 평가(제2방법)
  - 3.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의한 평가(제3방법)
  - 4.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평가(제4방법)
  - 5.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평가(제5방법)
  - 6. 합리적인 가격을 기초로 한 평가(제6방법)
- 위의 6가지 평가 방법은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함이 원칙. 단 제4방법과 제5방법은 납세의무자가 원할 경우 그 순위를 바꾸어 적용하는 것이 가능

#### 4. 제1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적용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 :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으로 평가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의 파악



가산요소 금액의 가산



공제요소 금액의 공제

## 5. 제1방법 적용의 요건(1)

- ①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된 것일 것
- ② 객관적인 거래가격이 있을 것
- ③ 유사물품의 가격, 국제거래시세 등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세관장이 요구할 경우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

### ◆ ‘수출 판매된 것’이 아닌 경우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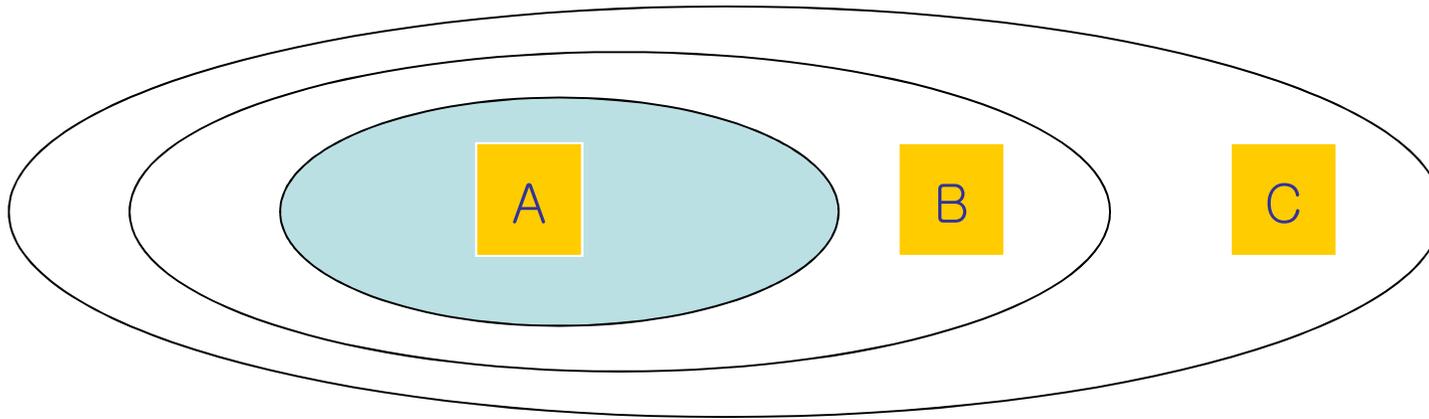
- ① 무상으로 수입하거나 무상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물품
- ② 위탁판매 수입물품
- ③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할 물품
- ④ 별개의 독립된 법인체가 아닌 지점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 ⑤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 ⑥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 폐기를 위해 수입하는 산업쓰레기등

## 6. 제1방법 적용의 요건(2)

### ◆ ‘객관적인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란?

- ①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단, 우리나라의 법령에 의한 제한 등 대통령이 정한 경우는 제외
- ②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또는 가격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이나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
- ③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나 처분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 ④ 구매자와 판매자간 ‘특수관계’가 있고 그 관계가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 7.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



- A : 매수인이 수입과 관련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대가
- B : 매수인이 매도인 이외의 자에게 수입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물품대금 일부, 로열티, 운임, 보험료 등)
- C : 매수인인 수입자가 지불하는 총 비용  
(내국운송비, 신용장개설수수료, 환가료 등을 포함)

## 8. 가산할 금액

- ①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 ② 용기의 비용과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등으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 ③ 생산지원비
- ④ 지적재산권사용료로서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수입거래의 조건으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금액
- ⑤ 사후귀속이익
- ⑥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 9. 공제할 금액

- ① 수입후에 행해지는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비용
  - ② 수입항에 도착한 후에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관련 비용
  - ③ 국내에서 부과된 세금과 공과금
  - ④ 연불조건 수입의 경우 연불이자
- ◆ 공제는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공제대상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